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	60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8년 12월 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개정이유

-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감면세목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하고, 일부 감면내용을 정리하기 위함

주요골자

○ 감면세목 확대

-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(시각의 경우는 4급)인 장애인이 본인·배우자 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·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

⇒ 면허세를 추가하여 면제토록 함

○ 일부 감면내용 정리

- 승용자동차 ⇒ 자동차로 함

*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차량범위가 종전의 승용자동차 외에 승합 및 화물자동차가 추가됨에 따른 것임
('98. 5. 22일 개정)

조례(안) : 별첨

근거법령 :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

기타 참고자료 : 별첨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중 “승용자동차”를 “자동차”로 하고, 동조제1항 본문중 “취득세와 등록세”를 “취득세·등록세 및 면허세”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적용예) 이 조례는 1999년도분 면허세부터 적용한다.
- ③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